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02

2022. 6. 14.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6. 1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의승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 인력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138명에서 19,139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 존속기한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나. 「공직선거법」 개정(’22. 4. 20.)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4급 +1, 6급 +1)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6 → 전문경력관 +6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1명)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2명),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명 증원(19,138명 →19,139명)하고자 제출됨.

나. 문화시설추진단 폐지(감원 3급 △1명)

○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와 지역별 문화시설 건립이라는 기구설치 목적의 달성에 따라 문화시설추진단(3급)을 폐지하고,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를 문화본부 산하 직속 4급 기구로 개편함에 따라 3급 1명을 감원함.

< 문화본부 조직 개편(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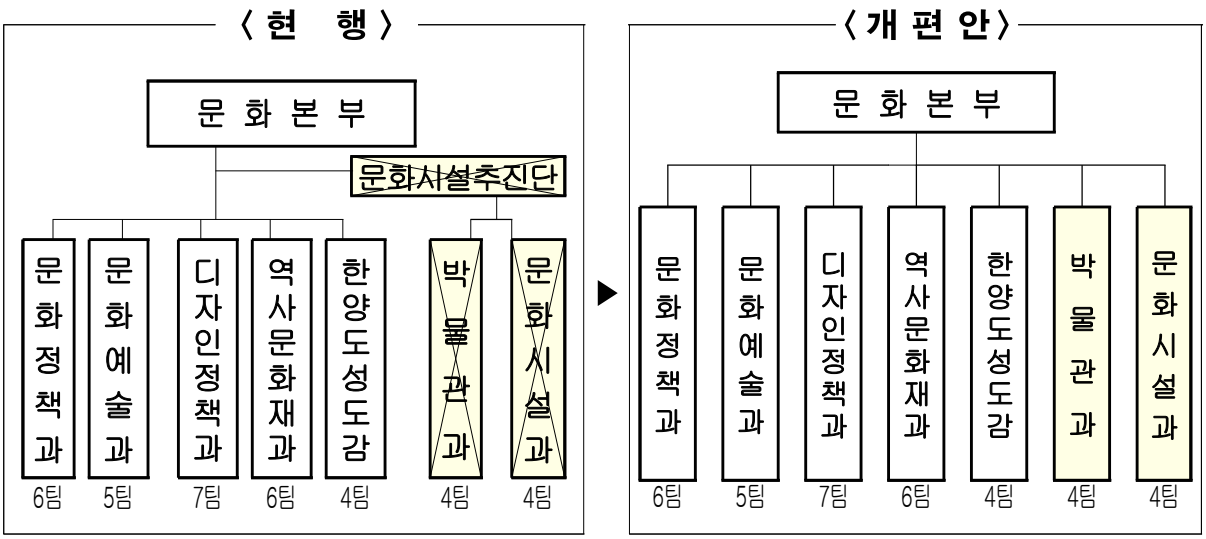

○ 2016년부터 한시기구[1]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추진단은 총 25개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기획부터 건립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수행해 왔음.

- 2022년 6월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 15개소(60%)의 조성을 완료하거나 공사 단계까지 진행하는 성과를 달성함.

○ 행정안전부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한시기구를 정규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으며, 올해 8월이면 6년의 존속기한이 종료됨.

-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존속기한 만료시 즉시 폐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2021.2.8.)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2021.5.20.) 존속기한(2021.8.18.→2022.8.18.)을 연장함.

○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시설추진단'의 폐지에 맞춰 3급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역별로 문화시설 편차가 큰 실정이므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이 필요함.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생략)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다.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증원 +2명)

○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2]되면서 서울시의회 의원 총정수가 110명에서 112명으로 증원됨(지역구 +1, 비례 +1).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 (이하 "지방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증원이 가능해짐.

- 지방기구정원규정의 4급 전문위원의 수가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게 됐으며,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½ 범위(2022년은 ¼)에서 채용하는 정책지원관[4](6급)이 1명 증원 가능하게 됨.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 지방기구정원규정 [별표 5] 중 서울시의원 정수(110명→112명) 변경 적용 대상

---

2) 종전에는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됨.

3)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4)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는 27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이미 반영하였으며(2021. 12.), 의원 정수가 2명 증가하면서 정책지원 인력의 28명 배정이 가능해짐.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을 확충하는 것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변화된 의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신설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급 전문위원만 증원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확정하지 않아 새로운 의회 개원에 따른 위원회 신설 수요를 적기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음.

- 당초 시의회사무처는 전문위원 증원에 맞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2팀 신설과 정원 증원(11명)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신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미반영됨.

- 한편 지방기구정원규정에 따라 5급 전문위원은 10명으로 제한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직위없이 5급 임기제공무원이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춰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상임위원회 신설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5급 이하 전문위원의 정수도 현행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함.

라.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5급 이하 △6 → 전문경력관 +6)

○ 개정안은 정원을 조정해 서울대공원의 동물사육 분야에서 전문경력관[5] ‘나군’ 4명, ‘다군’ 2명 등 총 6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

- 현재의 관리운영직 2명, 임기제 4명의 결원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전체 정원의 변동은 없음.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내역>

분야	대상	조정내역
동물사육	관리운영직(사육운영) 6급 1명 관리운영직(사육운영) 7급 1명 임기제(농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
	임기제(농업) 8급 1명 임기제(농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

※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 나군(6~7급 상당), 다군(8~9급 상당)

○ 서울시는 그간 동물사육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자 매년 1~2회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있음.

<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동물사육) 정원 조정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4.
조정인원	11	18(+7)	23(+5)	30(+7)	34(+4)
조정내역	-	사육운영8급 △7명 → 나군 +1, 다군 +6	사육운영7급 △2명, 8급 △3명 → 다군 +5	사육운영7급 △3명, 임기제 △4명 → 나군 +4, 다군 +3	사육운영7급 △1명, 임기제 △3명 → 나군+2, 다군+2

5) **전문경력관** :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 직군과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를 말함(「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이는 동물사육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예정 퇴직 인력[6] 등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시 일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동물사육 관련 향후 퇴직이 예상되는 인력은 관리운영직 9명, 임기제 24명임(2022. 6월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2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 인력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138명에서 19,139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 존속기한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나. 「공직선거법」 개정('22. 4. 20.)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4급 +1, 6급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6 → 전문경력관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28조(한시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별표 5(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2. 5. 9. ~ 5.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138명”을 “19,1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563명”을 “10,5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93명”을 “395명”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02	

같은 표 일반직 계란,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91	

3급	17	8		1	8	

4급	255	155	19	8	66	7

5급 이하 소계	10,244	

전문경력관 소계	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3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9,13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563명	1. ---------- ---------- ------: 10,562명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3명	4. ----------: 395명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구 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1,701					
정무직 계	4					
시 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0,690					
1급	7	6	1			
2·3급	24	19		1	3	1
3급	18	9		1	8	
3·4급	5	5				
4급	254	155	18	8	66	7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9					
전문경력관 소계	123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05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43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구 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1,702					
정무직 계	4					
시 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0,691					
1급	7	6	1			
2·3급	24	19		1	3	1
3급	17	8		1	8	
3·4급	5	5				
4급	255	155	19	8	66	7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4					
전문경력관 소계	129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05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43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현 행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41					
총 장	1			1		
교수 등	465			465		
조 교	75					

개 정 안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41					
총 장	1			1		
교수 등	465			465		
조 교	7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예상비용은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유진 (☏ 2133-6729)